#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조치일 : 2019. 6. 14.

3. 조치내용

| 대상 | 내 용 |
|---|---|
|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점감사 업무운영 강화

사고의 미연방지와 조기발견을 위하여 자점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자점감사 업무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점감사가 실질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점감사 업무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영업점 자점감사전담역이 자점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소형 영업점의 경우 일일감사자가 자신이 취급한 업무도 일일감사를 하고 있어 자점감사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점감사전담역이 없는 소형 영업점에 대하여는 상호감사자 지정 등 실질적인 자점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각 부점은 자점감사를 실시한 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감사 결과(오류·불비·부당사항 등 포함)를 전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준법감시부에서 각 부점의 감사결과 등록지연, 지적내용 오류(착오) 입력사항 등을 적시에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자점감사 결과를 적시에 확인하도록 전산등록 내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내용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특명감사는 주관부장의 지정항목과 사고발생 취약부문 등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부점장이 감사항목을 정하여 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준법감시부에서 각 부점에 매월 감사사항을 지정·통보하여 월별 감사형식으로만 감사토록 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특명감사 업무가 다소 미흡하게 수행되고 있으므로 준법감시부장의 지정항목 이외에 부점장이 정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특명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④ 준법감시부는 본부부서 및 영업점의 사고취약 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 1회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준법감시부는 명령휴가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고, 실시횟수와 상관없이 영업점에서 반기 1회 명령휴가를 실시하였다면 명령휴가를 이행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어 명령휴가 실시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며, 영업점 이외에 본부부서에 대해서는 명령휴가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 않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각 영업점의 명령휴가 제도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평가하며, 본부부서의 명령휴가 실적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명령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